



## 대 전 지 방 법 원

### 제 2 - 3 형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25노2307 저작권법위반                                       |
| 피 고 인   | 1. A<br>2. B                                           |
| 항 소 인   | 피고인들                                                   |
| 검 사     | 이지은(기소), 손세희(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전희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br>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정병환(피고인 B을 위하여) |
| 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6. 26. 선고 2024고정88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6. 6. 30.                                           |

####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인지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① B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 입사해서 기계 설계 업무를 했는데, 기존 컴퓨터에는 2D 설계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을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 3D 설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기존 컴퓨터가 사양이 낮아서 피고인에게 새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새 컴퓨터를 사고 거기에 3D 설계가 가능한 J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관리이사 등 직원들이 'J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구글 검색을 통하여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J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J라고 명기되어 있는 도면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직원이 4~5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무는 각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을 텐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거나 교육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B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사용기간이 짧지 않고, 사용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사 프로그램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3

재판장      판사      김동관      \_\_\_\_\_

                 판사      박준범      \_\_\_\_\_

                 판사      강주리      \_\_\_\_\_